

IV 질의 응답

(1) 한국측에서 일본측에 질문

【질문1】

디지털 조사기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이 국세청에 도입되기 전 세무조사는 조사반장의 감(感)이 세무조사의 성과를 결정지었습니다만, 오랜 기간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면 탈세혐의를 밝혀 내기가 쉽지 않아, 결국 세무조사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2011년도에 별도부서(첨단탈세방지 담당관)를 신설하여 디지털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서 가공자산을 찾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종류 등의 특수한 조사기법 등이 활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digital forensic) 이란

PC 등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정보를 분석해 범죄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입니다. 주로 검찰에서 사용하나 국세청에서도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 국내 대기업 H사의 탈세정보를 입수 후 이 기법을 활용해 가공자산 6,400억원을 찾아내 추징과세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 1】

일본에도 정보기술전문관 이라는 디지털분야 전문조사관이 있으며, PC 등의 전자정보를 해석하여 전자상거래 등의 세무조사 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는 회계장부, 원시기록장표 이외 PC내의 데이터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인 장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사담당관이 PC내부의 파일을 보고 싶다고 해도 납세자는 이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납세자의 동의가 있으면 PC내의 데이터를 조사할 수 있으나 소득과소신고 등의 증거가 발견되면 수정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2】

한국에서는 일본의 서면첨부제도에 대응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2011년 신설하여, 소득세법 제70조2에 해당(수입금액 도·소매업 등 20억원, 제조업 등 10억 원, 서비스업 등 5억 원)하는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한편,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세무사에게 허위확인금액에 따라 견책 또는 2년 이내의 직무정지에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서면첨부제도는 기재사항이 법으로 정하여진 것은 아니며, 세리사의 판단 하에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게 한국과의 차이점입니다. 첨부서면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세무조사 때 세리사가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세리사에 대한 징계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 2】

서면첨부제도는, 세리사법 제 33 조의 2 에 규정한 서면첨부와 제 35 조에 규정한 의견청취를 총칭하는 것이며, 2001 년도에 세리사법을 개정할 때 사전통지전의 의견청취제도가 신설되어 2002 년 4 월 1 일부터 실시되었다.

서면첨부제도의 취지는, 세무전문가인 세리사의 권리로써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세리사법 제 1 조(세리사의 사명)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세무당국도 세리사가 작성한 첨부서면과 그에 대한 의견청취를 존중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효율화·원활화·간소화를 이룰 수 있다.

서면첨부제도는, 세리사의 권리이며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와의 위촉계약에 의하여 신뢰관계를 기본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다만, 서면첨부는 세리사가 관여한 정도와 확인사항을 분명히 표시하여 신고서의 적정성을 표명하는 것이며, 내용을 전면적으로 보증 하는 것은 아니다.

질문하신 첨부서면을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세리사법 제 46 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징계의 대상이 된다. 이 허위기재란 사실과 다른 기재로 신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계산하고, 정리하며 또는 상담한 사항」이나 심사의뢰를 받은 신고서에 관하여 「심사한 사항과 결과」를 실제대로 기재한 경우에는 허위기재는 아니다. 이 징계관련 규정은 법적으로 첨부서면의 신빙성 확보라는 면에서 중요하며, 「책임과 징계처분」에 있어 허위기재의 해당여부 등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

세리사·세리사법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의 사고방식 (2015년 4월 1일 이후에 행한 부정행위 관련 징계처분 등의 적용)

재무장관 고시 제 104 호(발취)

I 총칙

세리사법(1951년 법률 제 237 호. 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한 세리사에 대한 징계처분 및 세리사법인에 대한 처분(이하 「징계처분 등」이라 한다.)시의 양정 판단은 II에 정해진 부정행위 유형마다 양정판단하며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 1 양정판단요소 및 범위

- 1 부정행위의 성질, 양상, 효과 등
- 2 세리사의 부정행위 전후의 태도
- 3 징계처분 등의 전력
- 4 선택한 징계처분 등이 다른 세리사 및 사회에 끼치는 영향
- 5 그 밖의 개별사정

II 양정 사고방식

세리사 및 세리사법인에 대한 징계(재무장관)처분

세리사 및 세리사법인에 대한 징계(재무장관)처분

대상행위		판단요소	계고	업무정지			업무금지
				~6월	~1년	~2년	
법45조	제1항(고의)	부정소득금액 등		←————→			
	제2항(과실)	신고누락 소득금액 등	←————→				
법 37조 (신용실추행위) 법 46조	법33조의2의 허위기재	허위기재 건수, 정도	←————→				
	자기 탈세(증가)	부정소득금액 등		←————→			
	고액이면서 직업윤리에 반하는 자기신고누락(과소)	신고누락 소득금액 등	←————→				
	조사방해	방해행위의 횟수, 정도		←————→			
	명의대여(법37조의2 제외)※	대여인 수, 작성건수, 기간, 대가		←————→			
	업무태만(수임업무)		←————→				
	회비체납		←————→				
	그 밖에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		←————→				
	제37조의2(명의대여)	대여인 수, 작성건수, 기간, 대가		←————→			
	법38조(비밀엄수의무)			←————→			
법41조(장부작성의무)		←————→					
법41조의2(사용인 등 감독의무)		←————→					
법42조(업무제한)	세무대리건수, 작성건수, 상달건수		←————→				
업무정지처분 위반						←————→	
그 밖의 경우		←————→					

※세리사업무가 정지된 세리사에서의 명의대여

세리사법인

	대상행위 (법48조의20)	판단요소	계고	업무정지			해산
				~6월	~1년	~2년	
법 또는 법 3 7 조 따 른 명 령 위 반	법인고유의 절차규정(성립신고 등, 정관변경, 합병 등)		←				
	자기탈세(증가)	부정소득금액		←	←	←	←
	고액이면서 직업윤리에 반하는 자기신고 누락(과소)	신고누락 소득금액 등		←	←	←	←
	회비체납		←				
	법41조(장부작성의무)		←				
	법41조의2(사용인 감독의무)		←	←	←		
	업무정지처분 위반						←
그 밖			←	←	←	←	
현재하게 부 당한 운영	법45조, 법46조에 규정한 행위	사원세리사의 양정(量定)	←	←	←	←	←
	그 밖의 경우		←	←	←	←	←

* 화살표표시 ← → 는 처분범위를 나타냄

【질문3】

한국에서는 보통 정기조사에서는 1년 또는 2년의 과세기간을 분석하고, 수시조사 때는 3년 정도 분석합니다. 이 경우 당초에 정해진 조사기간에 탈루혐의가 포착되면 구체적인 세금탈루의 증거가 없어도 혐의만으로 국세청재량에 의하여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국세청에 지나친 재량권을 부여해 납세자의 권익을 해치는 조항으로 내년부터는 「증거」 없이는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를 확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3】

조사연도를 소급하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 연장하는 것은 조사담당관이나 통괄관의 어렵계산에 의거 통상 이루어진다. 최근 연도의 수정사항을 발견함으로써 소급하여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

【질문4】

국세청은 세무조사건수는 줄이고 세수는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사후검증에서, 사전에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2014년도부터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즉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 업체별로 전년도 신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안내문을 통보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하여는 각 세무서별 협의회를 통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세수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세무조사는 줄이면서 세수는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 등은 있는지요?

【답변 4】

일본에서는 국세통칙법의 개정으로 경정기간이 5 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수정 신고기간이 3 년에서 5 년으로 연장된 결과, 조사간격이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 1 개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간격이 3 년에서 5 년으로 벌어졌으나, 종래 조사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인도 조사대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조사빈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사로 인하여 세수를 증대시키는 조치 등은 강구되지 않고 있다.

【질문5】

세무조사과정에서 중대한 조세범칙행위가 발견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포탈예상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이거나 신고수입 금액에 연간 조세포탈혐의금액이나 비율이 일정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조사 후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조세범칙조사대상과 고발 등에 대한 국세범칙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5】

일본에서는 세무서의 세무조사결과 검찰에 고발은 하지 않습니다.

우선, 세무서의 일반조사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부정소득이 발견된 경우(경험적으로 3 개 사업연도에서 1 억엔 정도 이상), 국세국 사찰부에 연락한다. 사찰부에서 조사를 계속하기로 수락한 경우 조사는 사찰부에서 강제조사로 바뀌게 된다. 사찰부에서 조사 받게 되는 기준은, 위의 소득기준 외에 유보재산이 있는지가 중요시 된다. 이는 재판에서의 벌금납부 명령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면 검찰청이 고발을 수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 일본측에서 한국측에 질문

【 질문1 】

중요사건에 대한 전문담당 T/F 란 무엇입니까?

【 답변1 】

국세청이 올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중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적극적 소송심판대응을 위한 국세청 자체 내의 전담조직(프로젝트팀/Project Team)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소송·심판대응에 나서, 전담 T/F(Task Force)를 운영하는 등, 집중관리로 소송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조사분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판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세청은 탈세 대응기반 확충을 위해 조사체계를 개편하고 송무역량 강화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 조사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조사과장 면담제를 전면 시행하고 일선 세무서의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등 현장중심, 관리자 중심의 조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경력직원으로 세무서 조사과를 보강하고 세무서 국제조사팀·역외탈세 정보팀을 신설·운영한다고 합니다.

2. 송무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서울청 송무국을 신설하고 민간전문가를 확대하며 팀제를 운영(3인 1팀, 세목별 전담팀)하는 한편 소송수행 관리 강화를 위한 평가팀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 질문2 】

채납자 재산은닉 혐의분석 시스템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 답변2 】

채납자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이란 채납자의 소득이나 소비지출, 재산변동 현황 등을 전산 분석해 호화생활 및 재산은닉 혐의자를 추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고가주택 거주자, 소비지출 과다자 등 재산은닉 혐의자를 매월 신속히 선정하고, 거주지 수색·추적조사 등을 통해 적기에 국세 채권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때에 맞춰 가동할 수 있는 적시성과 전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분석해 정확도를 높였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 은닉재산 추적프로그램은 매년 5 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맞추어 소득 현황을 파악해 분석에 착수하는 등 연 1 회 정도 모니터링 할 수 밖에 없었지만, 신규 도입되는 채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은 각 관서에서 접수 되는 정보를 곧바로 처리가 가능해 월 1 회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재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시기 및 가액, 주식보유현황, 소득발생시점, 신용카드 사용내역, 경우에 따라선 가족 등 특수관계자의 지출 및 재산취득 내역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혐의점이 발견되면 바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 질문3 】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조세불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자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려고 입법 발의한 상태다」라고 합니다만, 진전은 있는 것입니까?

【 답변3 】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설명 의무는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완료 후 납세자와 세무조사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이 통지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조세불복 사례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독일의 경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완료 후 납세자에게 쟁점 사항과 법률 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납세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있음.

이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마친 후 최종회의를 열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 및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납세자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협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함으로써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오해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불복 사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2).

(2) 국세기본법 개정 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12의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납세자와 최종 협의를 위한 회의(이하 이 조에서 “최종회의”라 한다)를 열고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게 조사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은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자가 최종회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진행상황

본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2015년 6월 10일 국회 박명재 의원 등 12인이 제안하였고(의안번호 1915529), 기획재정위원회에 2015년 6월 11일자로 회부되었으며, 2015년 9월 1일 현재 아직 상정은 되지 않은 상황이다.

【 질문4 】

신고성실도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4 】

I. 신고성실도의 평가

① 신고성실도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사항과 각종 세원정보 등을 반영하여 전산시스템에 의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무정보자료 수집 등 세원관리정보에 의한 평가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② 전산시스템으로 신고성실도를 평가할 때에는 평가요소 및 가중치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II.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자료의 통보 및 관리

(1)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자료의 통보

국세청장은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자료를 지방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자료의 관리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각종 성실도 전산분석 자료는 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이므로 대외보안 등에 유의하여야 하며, 정기조사대상 선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관리하여야 합니다.

III.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사전 성실신고 안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 국세청이 아래 9개 유형별로 개별업체마다 분석한자료 중 성실도하위 그룹에 속하는 업체에 성실 신고토록 안내하였습니다.

- (1) 적격증빙 과소수취 (2) 성실신고확인서 미 제출
- (3) 위장가공자료 등 수취 (4)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 (5) 지급이자 과다계상 (6) 재고자산 과다·과소계상
- (7) 해외 임금 수취 (8) 해외 주식투자 등 회수
- (9) 소득률 저조(동종업종 평균소득율 대비 70% 미만)

【 질문5 】

고객만족 센터의 구체적인 업무란 무엇입니까?

【 답변5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는 국민들의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불만, 건의사항 등에 관한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소속기관입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3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①전화상담-126 번으로 전화를 걸어 음성안내에 따라 상담분야(세목번호)를 선택하시면 상담관과 연결
- ②방문상담-국세청고객만족센터 1 층 상담방문실
- ③온라인상담-우선적으로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에서 유사사례를 검색해보고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

이처럼 고객만족센터는 국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질문을 해도 좋지만,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는 국민들의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 직접 유사사례를 핫이슈 상담사례, 자주 묻는 상담사례, 인터넷 상담사례로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또한, 국세청고객만족센터는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발전하기 위해 고객의 소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국세행정에 대한 불만, 고충, 개선건의, 칭찬 등을 남기면 성실히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 마련된 자료실에 들어가게 되면 나에게 해당되는 세금을 준비하는데 세목별로 다양하게 도움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 질문6 】

일본에서는 통고처분 관서장과 벌금상당액 수납관서장이 반드시 동일합니다만, 한국에서는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 답변6 】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조사관할을 달리한 경우 다를 수 있으며 조사관서장은 조세범칙혐의자 등에 대하여 범칙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조사범칙사건조사를 마친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통고처분을 하여야 하며,

또한 조세범칙 조사에 따라 벌과금상당액 등을 통고처분 하는 때에는 조세범칙 혐의자별로 작성한 통고서에 조사관서를 수입징수관서로 지정한 납부서를 첨부 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고처분 관서장과 벌금상당액 수납 관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통고처분 관서장은 통고서 송달과 동시에 통고서 사본을 덧붙여 통고처분 내용을 벌금상당액 수납관서로 지정된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